

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



제57조의2의 요약

- 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·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실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해당소득×국내 일반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기존의 법인세액에서 차감함.
- 간접투자회사 등은 외국납부세액·원천징수된 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일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가능함.
- 투자신탁 등이 외국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 자체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함.

● 제57조의2 【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】

- 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회사, 사모투자전문회사, 투자목적회사 및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,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(이하 이 조에서 “간접투자회사등”이라 한다)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(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(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,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)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. (2010. 12. 30 개정)
-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. (2010. 12. 30 개정)
- ③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항의 “사업연도”는 “투자신탁의 회계기간”으로 보고, “과세표준 신고 시”는 “결산 시”로 본다. (2010. 12. 30 개정)
-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. (2010. 12. 30 개정)
-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(代理)하는 것으로 본다. (2010. 12. 30 개정)

I.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

1. 본 조의 개요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회사·사모투자전문회사·투자목적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·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 간접투자회사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실제 원천징수되거나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세액에서 해당 실제납부 외국납부세액을 빼주는데 해당소득×국내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(14%)을 한도로 당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기존 법인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며, 실제부담 외국납부세액이 국내법상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.

투자신탁이익의 경우에는 투자신탁 등의 자체를 실체성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다.

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 자체가 아니고 투자신탁을 대리한 것으로 본다.

II. 간접투자회사 등의 환급세액 계산 (법 제57조의2제2항)

① 외국납부세액 환급세액 계산

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실제 부담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데 당해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.

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연도(회계기간)의 외국납부세액 합계액에 환급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.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.

$$\text{환급세액} = \text{외국납부세액} \times \frac{\text{당해 사업연도 총소득 중 과세대상소득}}{\text{국외 원천 과세대상소득}}$$

이때 외국납부세액은 실제부담세액을 공제하되, 국내소득에 대한 일반세율과의 형평을 위해 해당소득×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(14%)을 한도로 하여 국외 소득별로 계산한 외국납부세액 합계액이 된다.

환급비율은 국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사업연도 총소득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국외원천과세 대상소득으로 나누어 구한 비율인데 위 비율이 1 보다 큰 경우에는 1로,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.

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은 국외원천소득 중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.

투자회사나 투자신탁은 매일 환급세액을 환급예정세액으로 하여 간접투자증권 기준가격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.

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.

관련법령

● **시행령 제94조외2【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】**

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환급세액”이라 한다)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. (2006. 2. 9 신설)

1.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

$$\frac{\text{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(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)}}{\text{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}} \div \frac{\text{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}}$$

2.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

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(이하 이 조에서 “환급비율”이라 한다)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,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. (2006. 2. 9 신설)

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. (2006. 2. 9 신설)

④ 간접투자회사 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환급비를 계산시 “당해 사업연도”는 “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”로 본다. (2009. 2. 4 개정)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재산(이하 이 조에서 “집합투자재산”이라 한다)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(이하 이 조에서 “확인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(2009. 2. 4 개정)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 (2010. 2. 18 개정)
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 (2009. 2. 4 개정)

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사업연도”는 “투자신탁의 회계기간”으로, “사업연도의 종료일”은 “결산일”로 본다. (2006. 2. 9 신설)

● **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【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】**

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.

② **투자신탁도 법인으로 보아 환급가능 (법 제57조의2 제3항·제4항·제5항)**

투자회사의 경우는 해당회사 소득불합산하여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으나,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재산과세로서 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투자신탁을 법인으로 취급하여 결산시에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.

따라서 투자신탁은 법인세액은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외국납부세액 전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된다. 단, 배당에 대한 국내 원천징수세율(14%)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.

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.

III.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 제출

① 투자회사는 법인세 신고시, 투자신탁은 결산시 환급신청

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은 법인세 신고시, 투자신탁은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계산서 및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해야 한다.

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.

관련법령

● 시행령 제94조의2 【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】

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 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, 「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9조제1항제1호·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.

(2009. 2. 4 개정)

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신탁,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,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.

(2009. 2. 4 개정)

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.

(2006. 2. 9 신설)